議案番號 HT

題 目:大淸湖 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改正 同意案

提出年月日: 1995년 3월 일

提出者:大田廣域市長

□提案理由

- ㅇ 동 협약서의 유효기간이 매년마다 재협의토록 규정됨에 따라
- 대청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관한 자치단체(대전·충남·충북)간 협약서를 개정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함

□主要骨子

○ 동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1994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을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매년마다 재협의토록 함

□ 其 他

ㅇ '94 부담금정산

(단위: 백만원)

r~					
지자체별	'94 분담액	'94 집행액	정산잔액	비	고
계	1,882	1,177	705 _.		-
대 전	982	614	368	옥천하~	수처리장
충 남	362	227	135	운영비	절감
충 북	538	336	202		

ㅇ '95 운영비 분담액

(단위: 백만원)

11	_, _, '95 운약		영비	'94 운영비	'95 분담액		
지 자 체		(A)	%	잉여금(B)	(A - B)	비	고
;	계	1,910	100	705	1,205		
대	전	.997	52.2	368	629		
충	남	367	19.2	135	232		
충	북	546	28.6	202	344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關한 協約書(案)

신 · 구조문 대조표

. ~ 을	~ 로
부 칙	부 칙
제 2조(유효기간)	제 2조(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매년마다 재협의토록 한다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매년마다 재협의토록 한다

大淸湖 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關한 協約書

- 第1條(목적) 본 협약은 대청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되는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전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분담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第2條(준수의무) 대전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는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며,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기관인 충청북도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第3條(비용분담대상시설의 범위) 본 협약에 의하여 운영, 관리비를 분담하여야하는 시설은 특별대책지역안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공장폐수를 제외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설치, 운영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이하 "분담대상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 1. 하수종말처리장
 - 2. 간이오수처리장
 - 3.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장
- 第4條(운영비 총액의 산정) ① 충청북도지사는 매년 9월말까지 다음 년도의 분담대상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비의 총액을 1회계년도 단위로 산정하여 대전광역시장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 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대상시설의 운영, 관리비는 시설의 종류별로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수선유지비 기타 비용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 관리비 총액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를 확정한다.
- 第5條(운영, 관리비의 분담비율)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 관리비의 총액은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되는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한다.
- 第6條(분담액의 납부) 대전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운영, 관리비의 분담액을 분기초월 이내까지 충청북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 第7條(예산편성) 분담대상시설의 운영, 관리에 따른 분담액은 충청북도 특별회계에 편성, 운영한다.
- 第8條(정산 및 시설운영의 확인) ① 충청북도지사는 익년 1월31일까지 분담대상시설 운영, 관리비 집행내역 및 정산내역을 회계년도기준으로 작성하여 대전광역시장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정산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비의 과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의 분담액에서 이를 가감한다
 - ③ 대전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는 시설의 운영사항 및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동 회계 운영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영관리기관에서는 시정사 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第9條(분담요소 및 대상시설의 조정) ① 분담의 기준이 되는 원수 배분량 및 지방재정자립도는 별표2에 정한 바에 의하며, 이는 2년마다 상호협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 第10條(기타협의)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 전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附則

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체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매년마다 재협의토록 한다.

1995.

大田廣域市長 (印)

忠清南道知事 (印)

忠清北道知事 (印)

(별표 1)

環境基礎施設 運營, 管理費 分擔方法(제5조 관련)

"갑" 자치단체 부담액 = [α ×TC] X₁ + [β ×TC] X₂

여기서,

α = 0.5(원수배분량 비중)

β = 0.5(재정자립도 비증)

TC = 연간 총운영비

X₁ = 원수배분량 가중치(%)

= "갑" 자치단체 원. 정수 급수량 - 자치단체별 원.정수배분량의 합계

 X_2 = 재정자립도 가중치 (%)

(별표 2)

原.淨水配分量 및 地方財政自立度(제9조 관련)

가. 원.정수배분량

(단위 : 천m³/일)

			(01) 00/2/
구	분	원수·정수	가 중 치 (%)
계		674	100
대 전 광 역	시	430	63, 8
충 청 남	도	113	16.8
충 청 북	도	127	18, 8
.충 북 3	군	4	0, 6

※ 기준년도: 1992

나. 지방재정자립도

구	분	재정자립도 (%)	가 중 치 (%)
계		185, 8	100
대 전 광	역 시	75.4	40.6
충 청 남	남 도	40.1	21.6
충 청 년	루 도	40.6	21, 9
충 북 3	군	29.7	15.9

※ ('86-'90)평균치

大清湖特別對策地域內環境基礎施設運營費分擔에관한協約書改正同意案

審 査 報 告

1995. 3. 29. 文教社會 委員會

I. 審 査 經 過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1995. 3. 18. 大田廣域市長

나. 回附日字: 1995. 3. 21.

다. 上程日字:第3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 1 次 文教社會 委員會 (1995.3.29)

上程, 審查, 議決.

Ⅱ. 提案說明 要旨(提案說明:環境綠地局長)

- 1. 提案理由
 - ㅇ 同 協約書의 有效期間이 每年마다 再協議도록 規定됨에 따라
 - 大淸湖 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自治 團體 (大田・忠南・忠北)간 協約書를 改正코자 議會의 同意를 구함.

2. 主要骨子

同 協約書의 有效期間은 1994年度 12月 31日까지로 한 것을1995年 12月 31日까지로 改正하고 每年마다 再協議토록 함.

Ⅲ.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專門委員:金鎭鎬)

- 本 案件은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에 設置된 環境基礎施設의 運營 費를 汚染者 및 受惠者間, 즉 大田, 忠南·忠北등이 公共負擔키 위하여 지난 '93. 2. 18일 當 議會의 修正同義에 따라 締結된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環境基礎施設運營費分擔에관한協約書」의 內容中 그 有效期間을 '95年 12月 31日까지 1年間 延長코자 하는 內容임.
- 本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의 環境基礎施設은 廣域上水源의 水質 保護를 위하여 國費의 集中支援아래 設置된 것으로써 現在 下水 處理施設 2個所, 簡易汚水處理施設 5個所等 總 7個 施設이 完工 되어 稼動中에 있음.
- 本 協約에 따라 共同分擔하게되는 '95年度 環境基礎施設의 運營費는 總 所要費用 19億 1千萬원중 大田廣域市의 負擔比率(52.2%)에 따라 9億 9千 7百萬원을 負擔하여야 되나 옥천 下水處理場運營費節減등 '94會計年度 剩餘金이 發生함에 따라 이를 除外한實質負擔額은 6億 2千 9百萬원이 되겠음.

- 以上에서 報告드린 本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分擔에 관한 協約」은 協約締結 當時부터 대두된 汚染者・受惠者간 共同分擔에 따른 法的根據 矛盾 및 衡平性 缺如등 諸般 問題點이 解消되지 않은 채 海年 反復되고 있으나 120萬 大田市民의 唯一한 食水源인 大淸湖의 水質保護를 위하여 收容하여야 될 것으로 判斷되나 다만 環境政策 基本法 第 7條에 規定된 汚染者 負擔原則이 지켜지도록 많은 硏究와 努力이 있어야할 것으로 思料됨.
- Ⅳ. 討論要旨:省略
- V. 質疑 및 答辯要旨: 省 略
- Ⅵ. 審 査 結 果:原 案 可 決
- VII. 其他 必要한 事項: 없 음